

수 신 회원사
참 조
제 목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, 국민의힘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19990, 26. 7. 15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. 7. 23(목)까지 우리사회로 제출(팩스 052-256-8904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가. 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(안 16조제1항제1호)

- 공사에정금액 4.3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금지(2029년 12월 31일까지)

※ 4.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은 허용

나. 전문 간 컨소시엄은 2030년부터 시행(부칙 제16136호 제1조제3항)

붙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
회 장 조 현

